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꿈을 향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삶, <b>미래<sup>high+</sup></b> 수지교육 | ● 수지구 청평로 13번길<br>● 교무실 031) 262-0055<br>● 행정실 031) 262-2498<br>● 팩 스 031) 262-4479<br>● |
|  | <b>가정통신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제목: 학교 상담(방문) 사전 예약 운영 안내
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본교는 「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」에 따라 학교에 방문하기 전 방문 목적과 일시 등을 미리 소통·조율하도록 하는 **학교 상담(방문) 사전 예약제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수지초 교육 가족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**학교 상담(방문) 사전 예약 방법**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
### ■ 학교 상담(방문) 사전 예약 방법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학급 대면<br/>(비대면)상담</b> | ▶ 학급 전화 또는 학급 소통망(앱) → 대면 (비대면) 상담예약 → 상담 실시<br>▶ 교육과정 운영 중에는 교무실로 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민원 대응팀 대면<br/>상담</b>  | ▶ 유선 연락 → 민원 내용 파악 → 방문 접수 사전 예약 → 담당자 이관<br>→ 상담 실시 → 조치 이행 및 사후 처리 → 민원인 처리결과 알림<br>학교대표전화 ☎ (031) 252-0055 |
| <b>학교 방문 시</b>           | ▶ 학생보호인력 초소(정문 배움터지킴이실)에서 출입명부 작성<br>→ 방문증 패용하고 출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■ 함께 지켜주세요.

-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본교 민원대응팀에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.  
- 해당 교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. (※ 학생 상담은 담임교사 직접 응대)
- 구체적 답변 및 면담이 필요한 민원은 방문 접수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.
- 민원(소통) 접수는 근무 시간(8:30~16:30) 내 가능합니다.  
-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외(공휴일 포함)에는 연락이 불가합니다.
- 학생의 교육적 상담은 수업 시간이나 교육활동 중일 경우 상담이 어려우므로 수업이 끝난 이후 가능합니다.
- 아래의 경우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」에 따라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 - 목적, 일시,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
  -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
  -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
  -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·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
  -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,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
  - 상담 중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중단
- 부당한 요구, 반복 등으로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‘학교민원대응지원팀’으로 이관됩니다.

2026. 3. 30.

# 수 지 초 등 학 교 장